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이중가격* 또는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하고, 자금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 제21837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주요내용

- 가.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3, 별표 제1의2 신설)
- 나.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6 신설)
- 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해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마목 신설)
- 라. 임대료 감면기준의 중복 적용 방지에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바목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제1조의4 및 제1조의5로 하고,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제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실시한다.

1.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국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원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 제외 사유
2. 지원 제외 기간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제조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지원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제외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제조업자등을 법 제4조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제1조의5(중전의 제1조의4)의 제목 “(실태조사의 주기 등)”을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실태조사”를 각각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로 한다.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자금 지원 실태조사”라 한다)는

1년마다 실시한다.

② 자금 지원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의 현황,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2. 제1호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판매하는 농업기계 중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각각의 판매 수량
3. 그 밖에 자금 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금 지원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중전의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50%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조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 농업인

바. 나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임대료 감면은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여 둘 이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조의3(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제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실시한다. 1.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국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원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 제외 사유 2. 지원 제외 기간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제조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지원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제외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제조업자등을 법 제4조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 모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제1조의3 (생 략)	제1조의4 (현행 제1조의3과 같음)				
제1조의4(실태조사의 주기 등) ①	제1조의5(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 ① -----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② 자금 지원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의 현황,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2. 제1호의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판매하는 농업기계 중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각각의 판매 수량 3. 그 밖에 자금 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금 지원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조의6(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자금 지원 실태조사”라 한다)는 1년마다 실시한다.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 (생 략)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u>별표 1의2와 같다.</u>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 라. (생략) <u><신설></u>	② ----- ----- <u>별표 1의3과 --.</u> [별표 1의3]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50%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
---	---

<u><신설></u> 2. ~ 4. (생략)	<u>공자</u>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 농업인 <u>바. 나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임대료 감면은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감면만 적용하여 둘 이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 설>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법 제4조제2항에 대해 행정처분 적용시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	법 제4조의2 제1항	3개월	6개월	12개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받은 경우	법 제4조의2 제1항	3개월	12개월	24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연 락 처	(044) 201 - 1896